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70

2017년 9월 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7년 8월 14일

다. 회 부 일 : 2017년 8월 18일

라. 상 정 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욱형)

가. 제안 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목적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2)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3)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4)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7. 5. 18. ~ 2017. 6. 7.)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논의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8조[1]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2],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위임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고 지정 절차 : 입찰공고(자치단체장) → 제안서 제출(금융기관) → 제안서 평가(금고지정심의위원회) → 금고지정(자치단체장)

○ 관계법령에서 금고지정을 강행규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인 공금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공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금융기관)와의 협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1)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16.11.30)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등이 각각 상이한 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있어서 금고제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우리말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안 제2조 등에서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은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을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규범이 친숙성이 있을 때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입법에 있어 법령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가능한 명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고 법문장도 간결하고 국문 법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이 요구됨.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1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재정법 분법에 따른 변경
1조	지방 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	띄어쓰기
1조	금융기관중	금융기관 중	띄어쓰기
7조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1 및 별표 2	기호삭제
7조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따라 수의방법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7조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시와의 협력사업	알기쉬운 법령정비
9조	9명이상	9명 이상	띄어쓰기
9조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기호삭제
9조	3급이상	3급 이상	띄어쓰기
12조	운영중 제출받기	운영 중 제출 받기	띄어쓰기
12조	변경시	변경 시	띄어쓰기
12조	운영중	운영 중	띄어쓰기
12조	금고은행이	금고가	금고 정의에 은행 포함
17조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알기쉬운 법령정비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안 제17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2)

○ 안 제17조제1항은 시장에게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상황과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 바,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신한은행 정보보안업무 태만사건('17.8월),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건('14.1월),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13.3월)등 발생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 **상황, 금고**----------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 및 별표 2)

○ 안 〔별표 1〕 및 〔별표 2〕는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의 협력사업(5→4점) 및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7→6점)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보완관리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상향(5→7점)조정하려는 것임(붙임자료 참조).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중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점)와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6점)을 제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신 설 >	(5)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 신 설 >	(5)

개 정 안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참고자료 참조)**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세부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하향 조정(5→4점)은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인바, 금고 선정을 위한 협력사업비(출연금)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추진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평소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협력사업비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현금 및 물품을 의미함.

둘째,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 배점 하향 조정(7→6점)은 기존 금고에 유리한 배점을 축소하여 금고 지정 시 공정성과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임.

셋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항목의 배점 비중 상향 조정(5→7점)은 금융전산보안시스템의 중요성 증대와 보안능력 요구를 강화하여 평가하려는 것인바, 전산해킹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치구 금고 지정은 각 자치구와 금고은행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하고 있는바, 금고지정 변경시 각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부담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0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5. 18. ~ 2017. 6. 7.)결과: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작성자 : 재무과 지출팀 나주희 (☎ 2133 - 322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 직영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중”을 “금융기관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금고 지정”을 “금고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9명이상”을 “9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자”를 “사람”

으로,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급이상”을 “3급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제출받기”를 “제출 받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변경시”를 “변경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고은행이”를 각각 “금고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황 및 금고은행”을 “상황, 금고”로, “평가보고 등”을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요구가 있을 시”를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금고"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지방회계법」 제3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지방직영기업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시의	5. ---------- 금융기관 중 ------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금고지정**---------- ----.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 **별표 1 및 별표 2**--------.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 ---------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5. ---------- **시와의 협력사업**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 **9명 이상**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행정1부시장**-- ---------- **사람** ---------- - **과반수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3. ----- **3급 이상**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운영 중**---------- ---------- ---------- **제출 받기**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금고약정) ①、② (생 략)	제15조(금고약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 ---------- **변경 시** - ---------- ----------.
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운영 중**---------- ---------- ---------- ---------- ----------.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⑤ **금고가** ---------- ---------- **금고가** ----------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상황, 금고**----------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15.12.24)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나주희(2133-3228)